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봉양순 환경 환경수자원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등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이 다양해지고 있고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또한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3인 가구는 월 평균 15.6t,

4인 가구는 월 평균 18.2t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4인 가구의

세대당 수도 사용량이 월 15t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가구별 최근 물 사용량을 반영해

주거용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월 18t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